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8.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검진자료 활용을 위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수집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함.

수정주요내용

가.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22조제1항).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(안 제22조제3항 신설).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8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.

안 제22조제1항 중 “국가건강검진”을 각각 “국가건강검진,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”으로, “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건강보험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8조(검진자료의 활용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8조(검진자료의 활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건강보험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, 통계청, 「통계법」에 따른 통계작성기관,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</u>	제18조(검진자료의 활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	<u>료의 제출이나 의</u> <u>견의 진술 등을 요</u> <u>구할 수 있다. 이</u> <u>경우 자료의 제출</u> <u>을 요구받은 자는</u> <u>특별한 사유가 없</u> <u>으면 이에 따라야</u> <u>한다.</u>	
③·④ (생 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	③·④ (현행과 같 음)
제22조(자료의 협조요 청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 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건강 검진을 실시한 의 료인 또는 보건 의 료기관의 장, 「국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 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 이라 한다)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(이 하 “건강보험심사평 가원”이라 한다)과	제22조(자료의 협조 요청) ① ----- ---- <u>국가건강검진</u> <u>을 위하여 필요한</u>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</u> <u>민 건강 보험 공 단</u> <u>및 건강보험심사</u> <u>평가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22조(자료의 협조 요청) ①----- --- <u>국가건강검진,</u> <u>제18조제1항 및 제</u> <u>2항에 따른 검진자</u> <u>료의 활용을 위하</u> <u>여 필요한 경우</u> -- -----「 <u>국</u> <u>민건강보험법」에</u> <u>따라 설립된 국</u> <u>민 건강 보험 공 단</u> <u>(이하 “국민건강보</u> <u>험공단”이라 한다)</u> <u>및 건강보험심사</u> <u>평가원(이하 “건강</u> <u>보험심사평가원”</u>

그 밖의 관계 행정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<u>국가건강 검진</u>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의 견의 진술 등을 요 청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<신 설></u>	<u>이라 한다</u>)----- ----- -----<u>국가건강 검진,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</u>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보건복지부장관 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 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이루 어져야 하며, 제공 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---	--	--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4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서미화 · 김교홍
박지원 · 허영 · 박정
이병진 · 용혜인 · 윤호중
김영진 · 권칠승의원(11
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를 위해서는 ‘사망원인통계’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,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·관리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,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1항).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(안 제22조제3항 신설).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국가건강검진”을 각각 “국가건강검진,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”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자료의 협조요청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국가건강검진</u>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건강보험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<u>국가건강검진</u>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	제22조(자료의 협조요청) ①----- ----- <u>국가건강검진,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국가건강검진,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<u>보건복지부장관의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.</u>